
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9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, 민·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,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(안 제9조의2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2) 입법예고('21. 7. 8.~7. 28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항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박지혜(02-2133-5351)